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-46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3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여 마포구민 등 마포아트센터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 할인 제외 형태 중 일일이용료 삭제(제13조의3제3항)
- 나. 주차요금 및 체육시설 사용료 정비(별표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- 1) 입법예고: 2024. 2. 29. ~ 3. 20. (제출된 의견 없음)
 - 2) 새마포담당관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 - 3)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 - 4) 가족행복지원과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해당 없음
 - 5)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: 원안 의결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제3항 중 “일일이용료 및 개인레슨”을 “개인레슨”으로 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

(제12조제1항 관련)

별표 제1호. 대관료

나목. 개별기준의 표 7) 문화·체육 프로그램 차량, 그 밖의 차량의 주차요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주 차 요 금
문화·체육프로그램 차량	-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 무료 -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무료 - 추가 10분당 500원
그 밖의 차량	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<삭제> - (현행과 같음)

별표 제2호. 문화·체육프로그램 사용료

나목. 개별기준의 표 2) 나)의 기타란 다음과 같이 한다.

(단위: 원/월)

구분	일반	중·고생	그룹지도	개인지도	1일 입장
기타	· (현행과 같음) · (현행과 같음) · 체성분 분석 및 운동처방의 사용료는 1일 입장 사용료에 준함. 다만, 제13조의3 제1항은 적용받지 않음.		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13조의3(할인) ③ 제1항의 할인은 일일이용료 및 개인레슨과 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은 제외한다.</p>	<p>제13조의3(할인) ③ ----- 개인레슨----- -----.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p>[별표] 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제1호. 대관료 나목. 개별기준 7) 주차요금</p>	<p>[별표] 센터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제1호. 대관료 나목. 개별기준 7) 주차요금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85%;">주 차 요 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문화·체육 프로그램 차량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0분당 500원 ·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 까지 적용 ·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까지 적용 - 추가 10분당 500원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그 밖의 차량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“주차확인”에 한하여 무료 - 업무용차량(수강신청 및 방문 등)은 “주차확인”에 한하여 1시간 면제(추가 10분당 500원, 1시간 초과시 “주차재확인”차량 면제) - 10분 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 - 체육문화 강사차량은 강습시간만큼 무료 - 전기차 충전차량은 1시간 무료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주 차 요 금	문화·체육 프로그램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0분당 500원 ·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 까지 적용 ·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까지 적용 - 추가 10분당 500원 	그 밖의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“주차확인”에 한하여 무료 - 업무용차량(수강신청 및 방문 등)은 “주차확인”에 한하여 1시간 면제(추가 10분당 500원, 1시간 초과시 “주차재확인”차량 면제) - 10분 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 - 체육문화 강사차량은 강습시간만큼 무료 - 전기차 충전차량은 1시간 무료 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85%;">주 차 요 금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문화·체육 프로그램 차량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 무료 -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무료 - 추가 10분당 500원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그 밖의 차량</td> <td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<삭제> - (현행과 같음)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주 차 요 금	문화·체육 프로그램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 무료 -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무료 - 추가 10분당 500원 	그 밖의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<삭제> - (현행과 같음) 												
구 분	주 차 요 금																								
문화·체육 프로그램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0분당 500원 ·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 까지 적용 ·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까지 적용 - 추가 10분당 500원 																								
그 밖의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차량은 “주차확인”에 한하여 무료 - 업무용차량(수강신청 및 방문 등)은 “주차확인”에 한하여 1시간 면제(추가 10분당 500원, 1시간 초과시 “주차재확인”차량 면제) - 10분 이내 회차 차량은 면제 - 체육문화 강사차량은 강습시간만큼 무료 - 전기차 충전차량은 1시간 무료 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주 차 요 금																								
문화·체육 프로그램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프로그램 이용시간 초과 1시간 30분 무료 - 강좌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3시간 무료 - 추가 10분당 500원 																								
그 밖의 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 - <삭제> - (현행과 같음) 																								
<p>제2호. 문화·체육프로그램 사용료 나목. 개별기준 2) 체육시설 나) 헬스</p>	<p>제2호. 문화·체육프로그램 사용료 나목. 개별기준 2) 체육시설 나) 헬스</p>														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일반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중·고생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그룹지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개인지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1일 입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타</td> <td colspan="5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생략) · (생략) · 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일반	중·고생	그룹지도	개인지도	1일 입장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생략) · (생략) · 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 				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일반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중·고생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그룹지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개인지도</th> <th style="width: 15%;">1일 입장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기타</td> <td colspan="5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현행과 같음) · (현행과 같음) · 체성분 분석 및 운동처방의 사용료는 1일 입장 사용료에 준함. 다만, 제13조의3 제1항은 적용받지 아니함.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일반	중·고생	그룹지도	개인지도	1일 입장	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현행과 같음) · (현행과 같음) · 체성분 분석 및 운동처방의 사용료는 1일 입장 사용료에 준함. 다만, 제13조의3 제1항은 적용받지 아니함. 				
구분	일반	중·고생	그룹지도	개인지도	1일 입장																		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생략) · (생략) · 월 개인지도는 정기사용료 등록 후 이용 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일반	중·고생	그룹지도	개인지도	1일 입장																				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현행과 같음) · (현행과 같음) · 체성분 분석 및 운동처방의 사용료는 1일 입장 사용료에 준함. 다만, 제13조의3 제1항은 적용받지 아니함. 																								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·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」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안 제13조의3(할인)
- 별표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안 제13조의3(할인) 및 별표 정비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정임영
연락처	02-3153-8352